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I

외부감사 대상 및 선임절차를 중심으로

2021.04. 회계관리국

I. 외부감사법의 개요

II. 외부감사 대상 회사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2.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와 유한회사

III. 감사인 선임 제도

1.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2. 선임절차
3. 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4. 외부감사인의 선정
5. 감사인 선임 보고
6. 사후 평가

IV. 기타 제도

외부감사란?

외부감사 정의

○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

- 불이행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외감대상 회사가 아닌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감법상 외부감사가 아닌 임의감사에 해당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동 시행세칙 (금융감독원장 세칙)

Ⅱ. 외부감사 대상 회사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①

- 주권상장법인
- 상장예정법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아래 구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1)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2)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3) 복수 기준 해당	(직전 사업연도말 2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 3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Ⅱ. 외부감사 대상 회사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②

구 분	사례	요건해당 여부	외감여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 119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500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매출액 500억원 이상	외감대상
유한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5가지 기준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비외감대상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외감대상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1개(자산)에 해당	비외감대상

Ⅱ. 외부감사 대상 회사

2.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판단 시점

- 직전 사업연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 예) 2021년도 외감대상 판단은 2020년말 개별 재무제표로 판단

종업원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은 제외)

사원(유한회사)

-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자

Ⅲ. 감사인 선임제도

1. 선임기한 및 계약기간

선임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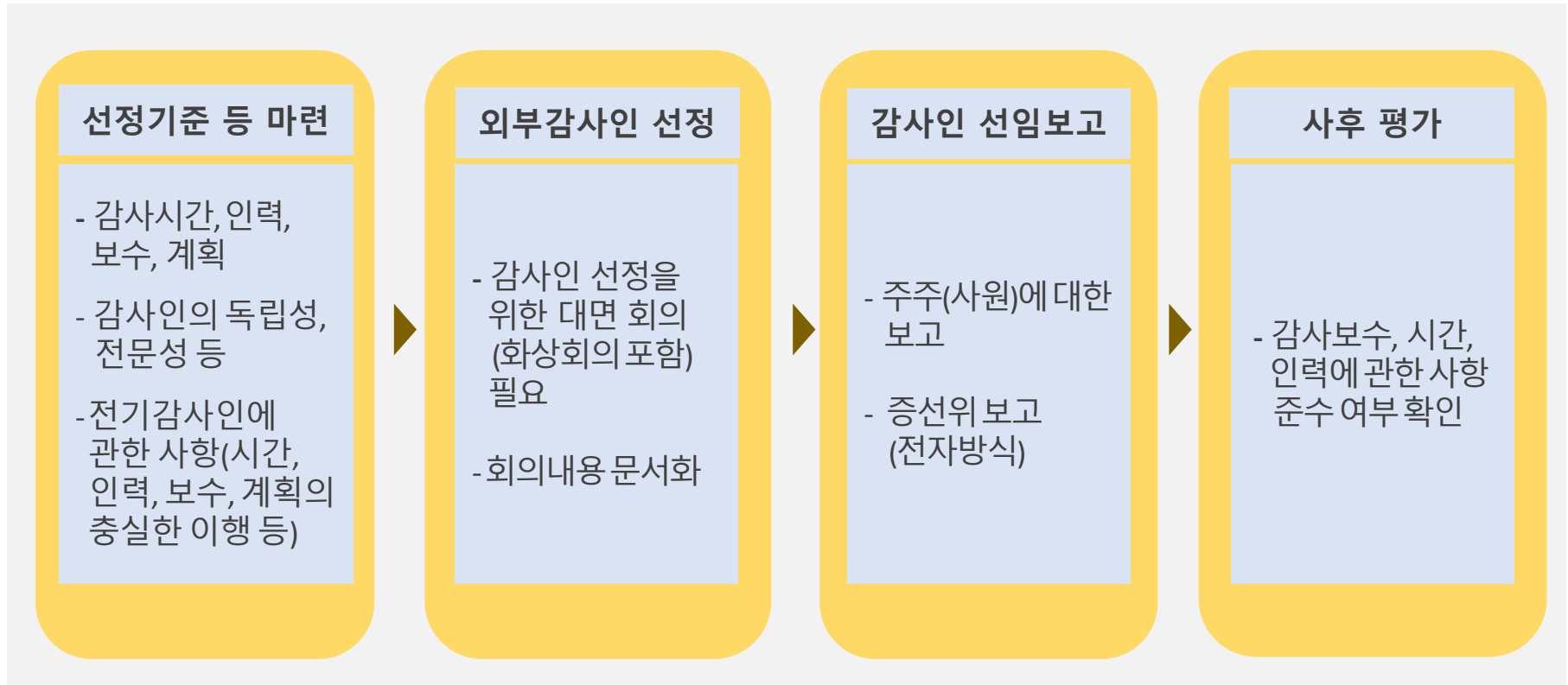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 다만 외부감사 첫해(초도감사)는 4개월 이내
 -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도 감사인 선임 기한은 **2021.4.30.** 까지

계약 기간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 금융회사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Ⅲ. 감사인 선임제도

2. 선임절차



Ⅲ. 감사인 선임제도

3. 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기준 및 절차 마련

○ 감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정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

*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대표이사가 마련

**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승인이 요구됨

마련 사항

- **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
 - 감사시간·인력·보수·계획의 충실한 이행 등

Ⅲ. 감사인 선임제도

4. 외부감사인의 선정 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
-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21.1.12.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Ⅲ - 4.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참고)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산 1천억원 미만)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상법: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Ⅲ. 감사인 선임제도

4.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

유한회사

-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가능**
- 다만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 회사**는 **사원총회**(대면회의 필요, 다만 영상회의도 가능)의 **승인** 필요

전기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상기의 선정절차 없이 전기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선정 절차 필요**

Ⅲ. 감사인 선임제도

4.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구분	개정 시행령('21.1.12.부터 적용)
구성원수	· 5인 또는 6인
구성원	· 감사 1명 · 사외이사 2명 이내(5인 구성 시 사외이사 1명) ·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인 · 일반 주주 1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임원 등 제외) ·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금융회사 임직원
외부전문가	· 부득이한 경우*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 가능 *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연락두절, 출석거부 등으로 해당 위원 구성 불가
참석	· 재적위원 2/3이상
승인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전원 동의 시, 위원장 포함 3인으로 구성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Ⅲ. 감사인 선임제도

4. 외부감사인의 선정 ④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주요 예외사항

- **주주위원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를 제외**하고 의결권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
 - 다만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 제외**
- 주주, 채권금융회사, 기관투자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 행사가 불가한 경우**
 -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류**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 행사(단, 전문가위원은 대리행사 불가)
-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외부전문가)으로 구성가능

Ⅲ. 감사인 선임제도

5. 감사인 선임보고 ①

금융감독원 보고

-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 위탁)에 전자보고*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Ⅱ 참조

주주 등에 보고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 또는 통지

- ①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
- ②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③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감사계약 종료시까지)

Ⅲ. 감사인 선임제도

5. 감사인 선임보고 ②

감사인 선임보고 시 제출서류

- ❶ 회사가 작성한 선임보고 공문
- ❷ 감사계약서 사본
- 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❹ (위원회 등 승인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록)
- ❺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제출

Ⅲ. 감사인 선임제도

6. 사후평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외부감사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 *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준수여부 확인결과 문서는 차기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시에 일괄제출가능)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

- **대표이사**가 감사보고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①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 외감대상회사는 아래의 기한 내에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

① 개별(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개최 6주 전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② 연결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회사 :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②

증선위 제출의무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같은 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
- 아래의 방법으로 전자제출

구 분	제출 방식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제출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제출

기타 제도 안내

감사계약의 해지

- 법령상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 해지 가능(감사인 임의교체 불가)

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미선임 등 법규상 지정 사유에 해당 시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수 있음

감사인 자격제한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회계법인만 가능

감사인 등록제도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